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년 10월 2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5년 10월 2일

라. 상정일자: 2025년 10월 16일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기획조정실장 김 은 영

### 나.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만료일이 도래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항제6호)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에 포함
- 일반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 금지(안 제7조제3항)
  - 기금 관련 통합 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심의위원회의 통합기금 운용심의 대행 근거 삭제
-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제9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12조제1항)
- 용어, 띄어쓰기 및 인용사항 정비(안 제3조~제5조, 제7조, 제11조)

##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영훈

### ○ 본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만료일이 도래한 통합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 ○ 검토 결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지출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금이며,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 대행을 금지하고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세부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아울러 매년 심의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이를 통해 기금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보고·관리할 수 있게 되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및 충실하고 책임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 론 요 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장기간 미이행하다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야 조례 개정예 착수하는 등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대응이 지연된 점은 개선이 필요함. 앞으로는 중앙 부서의 권고사항에 대해 사후적 조치가 아닌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가 요구됨.

#### 6.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